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82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김선교·구자근·김상훈

최수진 • 이철규 • 김석기

김위상 · 김정재 · 박정하

서일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 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,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22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3명 이상"을 "2명 이상"으로,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 지원을	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 지원을
위한 감면) ① 18세 미만의 자	위한 감면) ①
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	
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	
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	
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	
함하지 아니한다) <u>3명 이상</u> 을	<u>2명 이상</u>
양육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	
"다자녀 양육자"라 한다)가 양	
육을 목적으로 <u>2024년 12월 31</u>	<u>2027년 12월 31</u>
<u>일</u> 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	<u> 일</u>
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(자동	
차의 종류 구분은 「자동차관	
리법」 제3조에 따른다) 중 먼	
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, 제1호	
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	
「지방세법」 제12조제1항제2	
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	
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	
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	
경감한다. 다만, 다자녀 양육자	

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(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한정한다)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
<u>2027년 12월 31일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